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용 마약류 위해사범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(5급 1명, 6급 3명, 7급 1명)을 증원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645”를 “65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44”를 “649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25”를 “63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(제33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45</u>	<u>650</u>	+5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644</u>	<u>649</u>	+5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625</u>	<u>630</u>	+5
·	·	·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3